

ISD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

ISD는 전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4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등 전문성과 중립성을 가진 국제기구가 중재절차를 수행합니다.



ISD는 외국에 투자하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반세기동안 여러 국가들이 인정해 온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전세계 2,676개 투자협정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발효중인 FTA와 투자협정 85개 중 81개에 IS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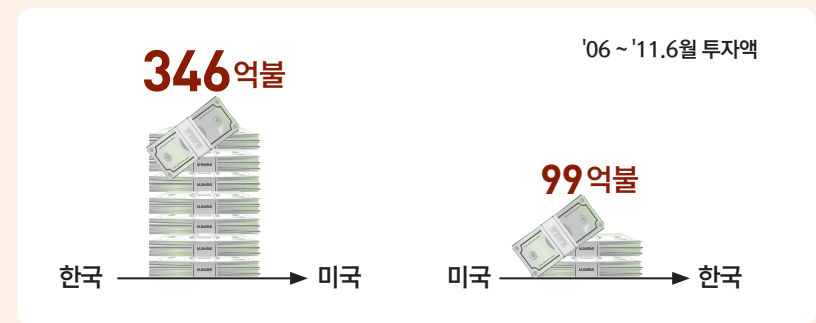
* EU 회원국들과는 한·EU FTA에서가 아니라 개별 투자협정을 통해 ISD를 반영

ISD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기업의 우리나라 투자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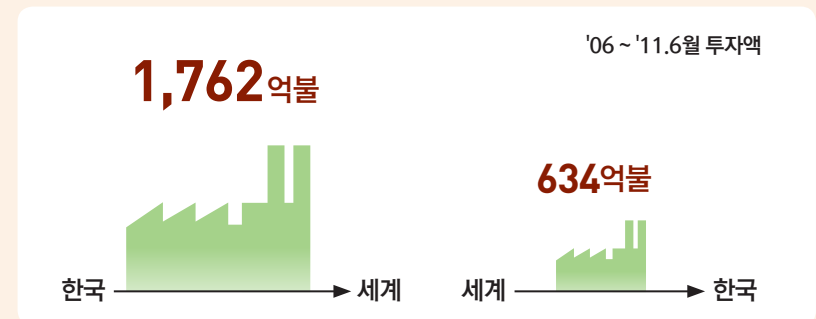
이에 따라 ISD를 통하여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ISD가 없으면 우리 기업은 미 국내법에 따라 50개주 지방법원에 제소해야 합니다.



또한,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ISD는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향후 여타 국가와의 FTA 가능성, 그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추세를 감안할 때 ISD는 더욱 중요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공공정책 자율권은 보장됩니다.

정부의 공공정책이 정당하고 미국 기업에 대해 비차별적인 경우 정부가 ISD 제소를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공공정책상 필요한 분야는 **협정문에 우리정부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해 두었습니다.

4대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는
협정의 적용을 배제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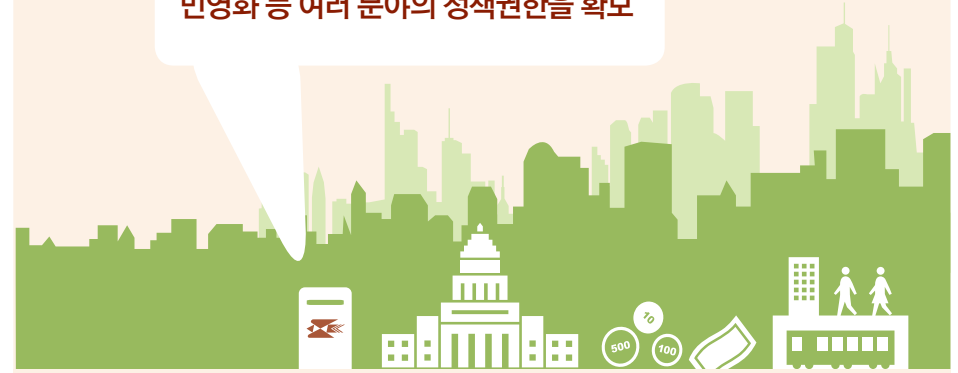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 안보, 비차별적
과세조치 등은 ISD 예외 대상

정부조달, 금융, 공공서비스, 공기업
민영화 등 여러 분야의 정책권한을 확보



교육·에너지·운송·방송 등
정부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44개 분야는 정부권한을 유보



따라서 ISD가 도입되면 정부의 정당한 자율적 규제권한이
위축된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하여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왜곡된 주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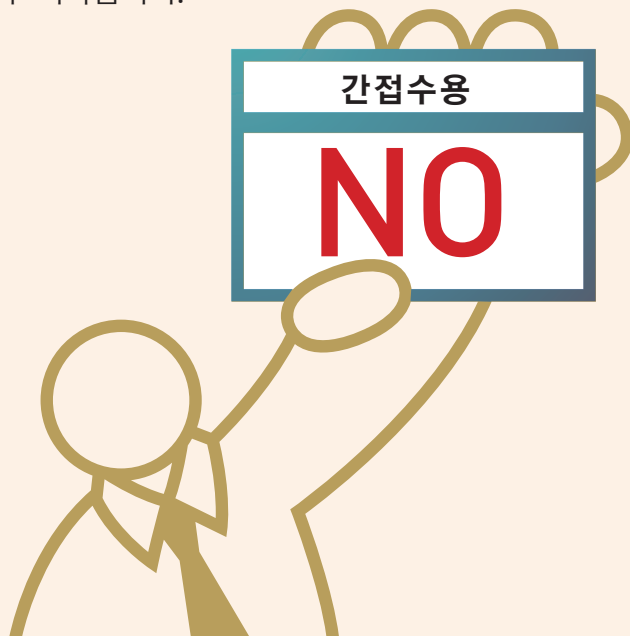
ISD 대상이 되는 간접수용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간접수용'이란 정부가 직접 수용하는 것은 아니나 투자자가 정부조치로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자가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한·미 FTA에서 인정되는 간접수용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조치는 ‘드문 상황이 아닌 한(except in rare circumstances)’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접수용은 정부조치가 ‘극도로 가혹하거나 불균형적 (extremely severe or disproportionate)’일 때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의 조치가 간접수용에 해당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간접수용 사례로 인용되고 있는 멕시코에서의 Metalclad 사건은 NAFTA 분쟁사례 중 간접수용으로 판정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Metalclad사건 개요

멕시코 정부는 1993년 쓰레기 매립장을 인수하고자 하는 Metalclad사(미국계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쓰레기 매립장 영업에 필요한 모든 인가가 발급될 것이라고 보장하였으나,

Metalclad사가 동 매립장 인수 및 처리시설 공사를 한 이후, 1995년 군 정부가 허가를 거부하고 주정부가 해당지역을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투자자가 전면적으로 박탈되었는데도 멕시코 정부가 유효한 보상을 하지 않아 2000년 ICSID가 이를 간접수용으로 판정



중재판정부는 전문성을 지닌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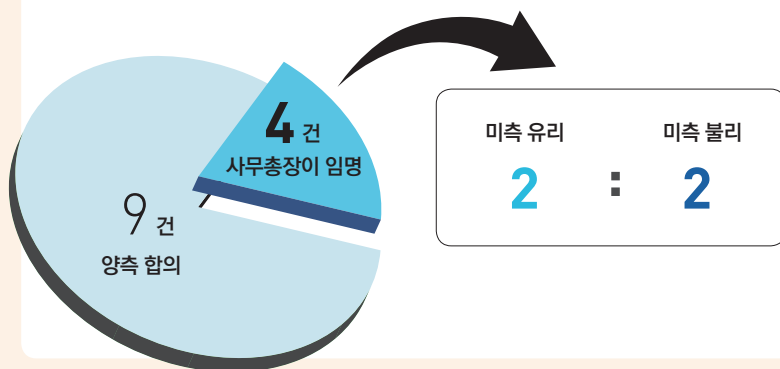
ICSID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있는 권위있는 국제중재기구입니다. 전세계 147개 회원국을 둔 ICSID가 편파적인 판정을 내린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외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되는데 투자자와 피소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임명하고, 양측 합의에 의해 의장 중재인 1인을 선임합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만 ICSID 사무총장이 제3국인 중에서 임명합니다.

실제 NAFTA사례 중 최종결정이 있었던 총 13건 중 9건이 양국 합의로 제3 중재인을 선정하였으며, ICSID 사무총장이 임명한 경우는 4건에 불과합니다.

이 4건에 대해서도 미국측에 유리한 판정이 2건, 불리한 판정이 2건인 점을 감안하면 ICSID 중재판정부가 미국의 입김아래 있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NAFTA 관련 ICSID 중재사건의 의장 중재인 선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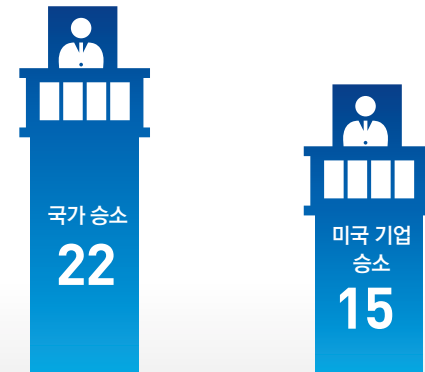


지금까지 미국 기업이 제소한 108건의 판정결과를 보더라도 미국 기업의 패소(22건)가 승소(15건) 보다 많았습니다.

또한, 한-미 FTA에서는 중재과정과 각종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투명성 조항을 도입하여 판정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제소한 ISD 판정

자료 : UNCTAD, 2010년



ISD 제소를 남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정부 조치가 정당하고 미국 투자자에게 비차별적인 경우에는
ISD 피소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공공정책상 필요한 분야는 협정의 적용 배제, 예외 설정,
미래유보 등을 통해 이미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해
두었습니다.

일부 남미국가가 제소를 당한 것은 대부분 정당한 보상없이
실시한 국유화 등 반시장적 조치 때문으로 시장경제원칙을
따르고, 안정적인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67년 ICSID에 가입한 이래
ISD에 피소된 사례가 없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막대한 비용과 중재판정이 내려지기까지
2~3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이 무분별하게 상대국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ISD에 대한 우려, 지나친 기우입니다.

조선일보 | 11월 2일

신희택(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교통사고(ISD에 따른 제소)가 무서워
자동차 타는 것(FTA의 효용성)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다. 문제는 분쟁을
어떻게 예방할지, 제소에 대응할
역량을 어떻게 키울지다.”

조선일보 | 11월 2일

신희택(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2006년에 ISD태스크 포스가 구성됐다.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 등 20명 가량이
참여해 2~3개월간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론을 냈다.”

한국일보 | 11월 4일

홍성필(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ISD 때문에 미국 기업들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한 남미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소송에 휩싸인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다. 남미국가들의
사례는 경제시스템이 잘 갖춰진
우리나라엔 적용하기 어렵다.”

중앙일보 | 11월 3일

이재형(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아르헨티나는 경제위기 당시 정부가
취한 정책으로 무려 40여건의 ISD
제소를 당했는데, 아르헨티나는
당시 많은 기업을 국유화했다.
외국 기업이 투자한 자산을 다
박탈한 것이다. 그럴 경우엔 보상을
해주는게 맞는게 아닌가.”

한·미 FTA,
이제 마무리할 때입니다



기획재정부